

III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გადა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5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소령 §20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법령 §88 소령 §98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 §12 소기통 12-12...1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소령 §16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기통 12-0...3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령 §11 소령 §38①2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이중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의2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기통 137-0...2,3
외국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 §18 조특법 §18의2

0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 2018.12.31. 취득분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분 5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 여부 확인(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도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
교육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구분	중점 확인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일정 요건의 외국인 포함)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0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p>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p>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 202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배우자는 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5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5.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다공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근로자가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기부금 표본조사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1%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0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 (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2/10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leq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19.2.12.부터 20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 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10\%$$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40\% (\text{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 60\%)$$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법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기부금 부당공제(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참고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begin{aligned} \text{① 과소납부세액} \times \text{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times \frac{22}{100,000} \\ \text{② 초과환급세액} \times \text{경과일수(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times \frac{22}{100,000} \end{aligned}$$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19.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3/10,000, '19.2.12.부터 '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 ④)